

동의과학대학교

제49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 : 2019. 06. 21.			
의원정수	11인	재적정수	11인

1. 일 시 : 2019년 06월 27일(목) 10:00
2. 장 소 : DIT 본관 2층 대회의실
3. 참석의원 : 8명(의장 김문수, 의원 좌승화, 박형진, 박규환, 최인배, 이성율, 윤정윤, 윤정오)
4. 결석의원 : 3명(의원 이태식, 이길홍, 김태우)
5. 참석교직원 : 0명
6. 안 건

제1호 의안) 학칙 개정(안) 심의

제2호 의안)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추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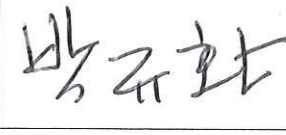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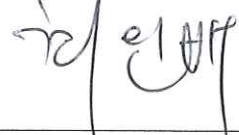
7. 회의내용

가. 개최

- 김문수 의장이 대학평의원 11명의 재적의원 중 8명의 참석으로 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, 제49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.

나. 안건 심의

제1호 의안) 학칙 개정(안) 심의

	김문수 의장	박규환 의원	최인배 의원
<간서명>			

- 고등교육법(강사법)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(강사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및 법적 준용 범위 명시)
- 개정학칙 신구조문대비표(안)

<간서명>	김문수 의장	박규환 의원	최인배 의원
	김문수	박규환	최인배

현행	개정안	변경사유
제14조(조직) ① (생략) ② 각 처·단에 처·단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<u>보하고</u> ,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. ③ 교무처·학생복지처·기획처·입학홍보처·산학협력단에 부처장·부단장을 <u>둘 수 있으며</u> 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<u>보한다</u> . ④ (생략)	제14조(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각 처·단에 처·단장을 <u>보하고</u> ,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. ③ 교무처·학생복지처·기획처·입학홍보처·산학협력단에 부처장·부단장을 <u>둘 수 있다</u> . ④ (현행과 같음)	정관 및 직제규정에 내용 중복에 따른 학칙 개정
제39조(제적)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. 1. 휴학기간 종료 후 4주(28일)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. 무 계출 결석 4주를 초과한 사람 3. 타교에 입학한 사람 4.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②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	제39조(제적)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. 1. 휴학기간 종료 후 4주(28일)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. 무 계출 결석 4주를 초과한 사람 3. 타교에 입학한 사람 4.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② <삭제>	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록금 반환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조문 삭제

- 박규환 의원이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의 정의와 강사의 소속에 대해 질의하다.
- 조민준 간사가 한국전문대학 교무·입학처장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한 ‘전문대학 강사제도 운영 실무매뉴얼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, 강사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11조의2(강사) 조문 신설을 통해 해당사항에 대한 명시함을 설명하다.

<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정의> 전임교원 - 전업직 전일제로서 제15조제2항의 임무에 제한이 없고 정년까지 임용의 기회가 부여되는 자 비전임교원 - 임용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자로서 전임교원의 임무를 대체하는 자 <강사의 소속> 강사는 별도의 직명으로,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으로 분류되지 않음. 따라서, 행정 구분 상 ‘강사’로 별도의 직종으로 구분해야 함 - 전문대학 강사제 운영 실무매뉴얼 中- ‘II.대학 규정 개정’ Q&A, p.16 -

- 김문수 의원장 및 박형진 의원이 전임교원 인사 임용 및 위촉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며, 제11조제2항 조문이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, 이를 명료하게 풀어

	김문수 의장	박규환 의원	최인배 의원
<간서명>	김문수	박규환	최인배

쓸 것을 제안하다.

○ 좌승화 의원이 해당 제안을 거듭 재청하다.

○ 김문수 의장이 학칙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다.

- 제11조(교직원)제1항 중 전임교원의 범위 명시 (산학협력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)
- 제11조(교직원)제2항 중 총장이 임용 혹은 위촉 가능한 교원에 대한 명시

○ 전 의원이 학칙 개정(안) 수정에 대하여 동의하다. (찬성:8, 반대:0)

○ 김문수 의장이 다른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, 학칙 개정(안) 심의가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.

제2호 의안)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서명 추천

○ 김문수 의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2 제2항에 의거한 간서명 대표임원을 추천받다.

○ 박형진 의원이 간서명 대표의원으로 김문수 의장, 박규환 의원, 최인배 의원을 추천하다.

○ 전 의원이 간서명에 대하여 동의하다. (찬성:8, 반대:0)

○ 김문수 의장이 제4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의 간서명을 김문수 의장, 박규환 의원, 최인배 의원이 서명함을 선언하다.

다. 폐 회

○ 김문수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
<간서명>	김문수 의장	박규환 의원	최인배 의원
	김문수	박규환	최인배

위 사실을 확인함.

2019. 06. 27.

동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

의 장

김 문 수

(서명) 

의 원

박 형 진

(서명) 

의 원

박 규 환

(서명) 

의 원

좌 승 화

(서명) 

의 원

최 인 배

(서명) 

의 원

이 성 율

(서명) 

의 원

윤 중 오

(서명) 

의 원

윤 정 윤

(서명) 